

미국에 있어서의 경찰취재

다음은 일본신문협회 주미대표인 橋本正邦 씨가 미국과 일본의 경찰취재를 비교하면서 쓴 「미국에 있어서의 경찰취재」라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최근 우리언론들이 경찰취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범죄사건 기사를 쓰는데 있어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경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편집자주>

미국의 경찰관계보도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1. 취재보도에 있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검찰이나 경찰당국도 이 점에 관해 깊은 배려를 하고 있다.
2.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반범죄사건에 관한 보도를 적게 취급하고 있으며 범죄 기사를 취급한다 해도 변천하는 사회생활과 관련시켜 특정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보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따라서 경찰본부에 배치하는 기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1. 범죄보도의 실례

우선 미국의 몇 개 신문에 게재된 범죄 및 사건보도에 관한 실례를 들어 보면-

<실례 1>

제목 : 『74 세의 여성 살해』

기사내용 : 74 세의 여성이 어제 스타랜 · 아일랜드의 아파트에서 동거의 남성과 다투면 끝에 칼에 찔려 죽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40 대 후반인 제랄드 · 에머리는 포트리치몬드시 알비온 · 프레-스 115 의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 진 · 맥로오린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 했으며 에머리는 경찰에 대해 이 여자가 떠들썩 하게 잔소리를 늘어놓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뉴욕 · 데 일 리 · 뉴스지 1 단 기사)

<실례 2>

제목 : 『포트맥강에서 병사가 사망』

기사내용 : 워싱턴 D.C., 항만경찰 발표에 의하면 포트맥강에서 보트가 뒤집혀 한 청년이 익사했다. 이름은 근처에게 사망통보가 되기까지에는 공표되지 않는다. 경찰에 의하면, 이 청년은 육군관계자이다. K 스트리트 3500 에 있는 잭스 · 보트 하우스의 지배인 후랭크 · 백스터에 의하면,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려 보트하우스의 창너머로 보았더니 남자의 손이 수면위로 올라와 뭔가 잡으려고 하는 동작이 보였는데, 오후 2 시경, 이 청년이 보트를 빌릴 때 헤엄을 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경찰은 45 분간 강을 수색 끝에 시체를 발견했다. 이 청년이 빌린 보트는 유리섬유로 만든 17 피트의 카누이다. (워싱턴 · 포스트지 1 단기사)

<실례 3>

제목 : 『교통사고사로 알렉산드리아 시민 체 포』

기사내용 : 엿그제 알렉산드리아시의 테레그라프 · 로드에서 보행자를 치어죽이고 사고현장을 도망친 알렉산드리아의 한 시민이 살인혐의로 고발되었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알렉산드리아시에 줄 ·로드 801 에 사는 어네스트 · 리 · 브폴딩(22)은 페어팩시

웨스트게이트 4004 의 데이비드 · 보니(17)를 치고 도망가다가 곧 체포되었다고 당국자가 밝혔다.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오후 9 시경 일어난 사고현장에서 보너는 사망했다. (워싱턴 ·포스트지 1 단기사)

<실례 4>

제목 : 「사이클을 맹추격-동승자사망」

기사내용 : 어젯밤 리치몬드구 네거리에서 경찰이 뒤쫓던 모터사이클이 승용차에 받쳐 모터사이클 운전수는 중상을 입었으며 동승자는 사망했다. 경찰에 의하면 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클을 운전한 브렛드 · 제섭과 그의 동승자가 7 시경 시속 약 50 마일로 승용차사이를 누비며 달리다가 15 번가의 붉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것을 순찰차가 발견했다. 순찰차는 16 번가에서 북쪽으로 꺾어 도망가는 사이클을 추적했다. 사이클은 16 번가와 클레덴트가의 우선 멈춤 표시에 가까이 와서 속도를 늦추었다. 이 네거리에서 모터사이클은 동쪽을 향해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 대파되었다. 사이클 동승자는 20 피트 떨어진 인도에 내던져졌다. 그녀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근처에게 통보되기까지는 발표되지 않는다. 사이클을 운전한 제섭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샌프란시스코 · 제네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승용차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 크로니클지 1 단기사)

<실례 5>

제목 : 『경찰메모 중에서』

기사내용 ; ① 시연락선 승무원인 로버트 · 마이클슨(46)이 스타텐섬 마야크스 · 프레-스 450 가에서, 엔진이 걸려있는 승용차안에서 자살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딸의 약혼파티에 쓸 얼음을 사기 위해 카아슬튼 179 의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갔었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경찰의 비밀통보전화 9877-7935 로

② 30 세 가량의 신원불명의 남자시체가 브룩클린의 하이랜드 ·파크지구 그로스비가에 있는 잔디밭에서 발견되었다. 시체는 다른 지점에서 옮겨져와 버려진 것 같다. 몸에 지니고 있는 보석은 그대로 있었다. 경찰에 의하면, 목을 졸려 죽은 것 같다.

③ 자마이카 · 버스회사의 운전수가 프란시스 · 루이스가와 자마이카가의 정류장에서 발차한 직후 단 한 사람의 승객으로부터 권총위협을 받고 강탈당했다. 피해자인 조셉 · 죠이너(31)는 시계와 현금 6 달러를 빼앗겼다. (뉴욕 · 타임즈지 1 단기사)

II. 실례가 의미하는 것

(1) 사건의 정보원이 경찰당국이라는 것을 귀찮을 정도로 짧은 기사 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기자자신의 견문이나 직접취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례 4>는 되풀이되는 정보원명시는 없으나 첫머리에 특별히 눈에 띄게 경찰의 설명을 기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사자에 대해서는 근친에게 사망을 알리기까지는 이름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하나의 원칙으로서 확립되어 있으며 신문이나 독자도 이점에 대해서 경찰을 추궁하지 않는다. 전쟁시에 전사자에 대해서도 같다.

(3) 선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일본언론에서 이를 보도한다면 『아베크 · 바이크 포주』 『연상의 여성을 자살-꾸지람 듣고 逆上』 등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붙이고 싶지 않았을까. 뉴욕 · 타임즈 지의 『경찰메모에서』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2건의 살인사건으로 보이는데 날짜도 없이 짙막하게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일본의 사건기자였다면 「그렇게 취급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편집자주 : 한국의 언론도 <실례 1>의 경우 『연상의 여인을 칼로 찔러』라든가 연상의 여인과 연하의 남자가 동거하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생활을 읽을꺼리로 엮어서 독자나 시청자의 흥미를 돋구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4) 미국신문에서 이러한 범죄 기사를 찾아내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범죄 기사를 거의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하더라도 1 단에 몇 행 정도의 눈에 띄지 않는 짧은 것이다.

III. 경찰 출입 취재진의 현황 — 경찰 출입기사는 극히 소수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취재진은 일본에 비해 극히 적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경우 메트로폴리탄 경찰본부전임은 3명뿐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2시부터 10시반까지의 2교대로 2명이 번갈아 근무하며 한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의 주휴나 연휴때의 교대요원이다. 야간에는 경찰본부에 한 사람도 나가지 않는 셈인데 이는 본사에 비치되어 있는 수신기로 경찰 또는 소방서의 무선방송을 듣고 긴급상태에 대비토록 하기 때문이다. AP 통신사는 뉴욕에서는 3교대로 상시 1인을 경찰본부에 배치하고 있으나 수도워싱턴에서는 AP, UPI 지국이 다같이 국제, 전국뉴스취재에 역점을 두고 있어 경찰본부에는 기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지도 경찰본부배치기자가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긴 하다. 일본에서는 경찰무선을 엿들으면 죄는 되지 않지만 이용해 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경찰무선도공공의 전파이므로 이용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무선으로 들었는데……」하고 기자는 경찰에 찾아가 취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보스턴 ·글로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취재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동지는 편집국에 350명(77년 현재)의 기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원이 부족해서 경찰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내가 만난 각사의 편집인들은 미국신문의 경찰보도가 양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입을 모아 지적했다. 평범한 살인이나 강도사건을 경찰이 발표하는 대로 보도하는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특별한 형태나 배경의 범죄에 한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 큰 사건이 일어났을 해에는 수도권데스크나 전국데스크의 기사를 동원하여 취재토록 하며 상시 경찰에 배치하는 기자는 가능한 한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항공기납치사건을 포함한 인질사건, 연속살인사건 등 큰 사건일 때에는 경찰본부에 출입하는 담당기자는 경찰에 입수된 정보를 데스크에 전하는 일만 하고 본격적인 취재나 집필은 노련한 기자가 맡는다. 경찰보도의 양적감소에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당국의 발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신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천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배심제도하의 미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측의 이의제기로 애먹는 일이 가끔씩 있어 경찰에서도 발표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찰의 발표로 사건을 알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혐의자가 체포되었다든가 도망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자의 주장이나 해명을 듣기가 극히 어렵다.

세째,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신문에 대한 소송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경찰이나 경찰측이 흥미본위의 발표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 측의 주장이나 해명도 듣기 어려워 선불리 붓을 놀렸다가는 피소되기 쉽고 그렇게 되면 독자를 놓치는 결과가 된다. 「워싱턴 ·포스트」지 메트로폴리탄 ·데스크의 에디터인 아우니씨는 경찰 기사를 쓰는데 있어 알아두어야 할 점은 ① 가급적 독립적인 조사로 체크한다. ② 혐의자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가정하에 기사를 쓰지 않는다. ③ 혐의자의 전과사실은

재판에서 유죄가 판명되기 전에는 쓰지 않는다. ④ 자백은 프린트된 인쇄물이 존재하지 않는 한 쓰지 않는다. ⑤ 선정적인 내용을 쓰지 않는다는 것 등이며 이러한 것들을 기자들에게 철저히 주입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보스들 · 글로브」지의 국제 · 전국 에디터인 스노우씨는 이에 덧붙여 「경찰기사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사전에 의논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스노우씨에 의하면 고문변호사는 상의받은 그 기사의 취합선택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화하여 보도할 경우 어떠한 사태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설명하는데 그친다. 최종적인 판단은 이 설명을 토대로 에디터가 내린다.

IV. 증가일로의 명예훼손 소송

지난 77년 4월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신문발행인협회(ANPA) 연차총회에서는 주제별 토의가 있었는데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테이블에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ANPA의 고문변호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77년 3월말까지의 13년간 신문이 명예훼손으로 패소한 케이스는 1천 7백여건, 손해배상총액은 500만 달러를 넘으며 현재(77년 3월말) 897건의 소송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마다 신문의 피소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이었다.

미국에서는 지방에 따라 시민의 존재양식이 상이하여 시민이 배심원이 되는가 하면 주법도 다르기 때문에 소송의 결말이 판이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을 보도했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실례가 보고되었다.

실례에 의하면 한 주부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약 200마일 떨어진 도시로 나가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썼는데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의적인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사망기사에 과거의 범죄를 관련시켰다는 것만으로 패소한 사례도 있다. 전과 그밖의 좋지않은 과거사라도 기사와 관계되는 것이면 써도 별문제가 없겠으나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을 써넣든가 하면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다. 77년 4월 12일 NBC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두 사람의 편집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닐(뉴욕 · 뉴스지 편집주간) :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프라이버시의 극단적인 침해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히 지나친 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공정이라는 문제이다. 개인에 관한 사항을 취급할 때에는 그것이 불공정하거나 잔혹스러워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호지(시카고 · 핀 · 타임즈지 편집주간) :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있고 명예훼손법이 존재한다. 최근의 법정의 판결은 이 법률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에게 있어 일하기가 약간 어려워져 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V. 맺는 말

미국에도 일찌기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유행되었다.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가 무시되더라도 흥미본위로 써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서서히 탈피하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알권리에 보답한다는 꽤 어려운 방향으로 미국의 신문은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주로 경찰의 발표에 의지하는 범죄기사의 보도가 소극적인 상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법정의 판결과 여론이 미국의 신문들을 허약하게 했다는 견해도 있음직하다.